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방 송 통 신 설 비 의 기 술 기 준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20. ~ 8. 1.)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이하로서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16호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 본다.

제3조제1항제1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의2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저압”과 “고압” 및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2 비고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별표 3 비고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선 수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각 실별 통신용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각 실별 통신용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별표 4 비고에 제4호와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는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장비를 국선접속설비의 일부로써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설치 운용에 필요한 장소 및 통신사업자가 광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의 국선단자함부터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은 사업자 서비스를 각 단위세대 및 업무구역에 전달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은 사업자 국선용 광섬유케이블

과 접속을 위해 사용한다.

6.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건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①----- -----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이하로서 바닥면을 설치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16호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 본다.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17. ----- ----- ----- 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19. “저압”과 “고압” 및 “특고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2. (생략) ② (생략)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table> <tr> <th>건축물 규모</th><th>확보 대상</th><th>확보 면적</th></tr> <tr> <td>1. (생략)</td><td>가. (생략) 나. (생략)</td><td rowspan="2">(생략)</td></tr> <tr> <td>2. (생략)</td><td>(생략)</td></tr> </table> 1.~ 7. (생략) <신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table> <tr> <th>구분</th><th>확보면적</th></tr> <tr> <td>1. (생략)</td><td>(생략)</td></tr> <tr> <td>2. (생략)</td><td>(생략)</td></tr> <tr> <td>3. (생략)</td><td>(생략)</td></tr> <tr> <td>4. (생략)</td><td>(생략)</td></tr> </table>	건축물 규모	확보 대상	확보 면적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구분	확보면적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삭제> <삭제>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table> <tr> <th>건축물 규모</th><th>확보 대상</th><th>확보 면적</th></tr> <tr> <td>1. (현행과 같음)</td><td>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td><td rowspan="2">(현행과 같음)</td></tr> <tr> <td>2.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1.~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table> <tr> <th>구분</th><th>확보면적</th></tr> <tr> <td>1.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2.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3.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4.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건축물 규모	확보 대상	확보 면적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확보면적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물 규모	확보 대상	확보 면적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구분	확보면적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건축물 규모	확보 대상	확보 면적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확보면적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4. (생략)	
<신 설>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4] [별표 4]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 건축물	(생략) 가. 국선단자합에서 세대단자합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합과 동단자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합에서 동단자합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동단자합에서 세대단자합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 건축물	(생략) 가. 국선단자합에서 세대단자합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

1.~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4] [별표 4]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세대단자합이나 ----- -----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 나. ----- ----- -----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 ----- 이 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 ---
2. 업무용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각 실별 통신용단자합이나 ----- ----- 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 나. -----

	자합과 동단자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합에서 동단자합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동단자합에서 세대단자합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비고	
1.~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부칙	
<신 설>	
<신 설>	

	----- ----- ---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 각 실별 통신용 단자합----- ----- -----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사업자는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장비를 국선접속설비의 일부로써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설치 운용에 필요한 장소 및 사업자가 광섬유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의 국선단자합부터 동단자합까지 광섬유케이블은 사업자 서비스를 각 단위세대 및 업무구역에 전달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은 사업자 국선용 광섬유케이블과 접속을 위해 사용한다.	
6. 제3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른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건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	

<신 설>	<u>제1항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u> <u>「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u> <u>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u> <u>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u> <u>「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u> <u>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u> <u>「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u> <u>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u> <u>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u> <u>규정에 따른다.</u>
--------------------	--